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성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04

발 의 년 월 일 :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영한, 서상열, 옥재은, 유정인, 유정희, 이상욱, 이성배, 이소라,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이 종결되면서 교육 및 행사와 지역 축제가 활성화됨에 비례하여 엄청난 양의 폐현수막 역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초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쉬지 않고 현수막을 제작해 자신을 홍보하는 덕에 그 폐현수막은 더욱 증가하는 현실임

○ 이에 서울특별시 내 공공기관의 회의실, 동아리방, 다용도실 등 다양한 교육 및 행사와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공간에 대하여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폐현수막 줄이기 정책으로 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에 대해 필요성이 제기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 권장을 근거함

나. 또한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지자체,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등 교육과 행사가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를 우선 지원함을 근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현수막 모양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을 말한다)게시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공단

4.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시장이 전자현수막게시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현수막게시대의 적극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3(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현수막 모양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을 말한다)게시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공단 4.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시장이 전자현수막게시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현수막게시대의 적극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의3(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의3(전자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자현수막게시대의 규모, 설치 위치 및 사이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